

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 등 변경

2016. 12. 29. 입법예고되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“상증세법”)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순자산가치의 80%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하한으로 정한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의 시행일(2017. 2. 3. 예정) 이후 상속·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, 2017. 1. 31.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시행령(2017. 2. 7. 공포 예정)에 따르면 그 시행시기를 2017. 4. 1. 이후 상속·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, 그 하한율도 시행 후 1년간은 순자산가치의 70%를, 그 이후부터는 80%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이와 같은 변경은 개정전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이미 합병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합병등기가 개정된 평가방법의 시행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정된 평가방법이 적용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평가방법의 급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, 평가 하한액도 순자산가치의 70%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(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①항) → 시행시기 약 2개월 유예 및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

개 정 안	변 경 안
■ 비상장주식 평가 • (원칙)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:2로 가중평균액 - 1주당 순손익가치 =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/ 10% - 1주당 순자산가치 = (자산 - 부채) / 발행주식 총수	■ 좌동

〈신 설〉 ○ (하한설정) 순자산가치의 80%를 하한으로 설정 * 비상장주식 평가액 = Max(가중평균치, 순자산가치의 80%) ○ 적용시기 : 공포일 이후 상속·증여분 부터 적용	○ 하한액 - '17.4.1 ~ '18.3.31 : 순자산가치의 70% - '18.3.31. 이후 : 순자산가치의 80% ○ 적용시기 : '17.4.1.이후 상속 · 증여분부터 적용
--	---

참고로 자산총액 중 주식 등 가액이 80%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개정 내용은 공포 예정일인 2017. 2. 7. 이후 상속 ·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●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| TEL. 02 316 4246 | E-Mail. hjikim@shinkim.com |
| ● 노형철 세무사 | TEL. 02 316 4483 | E-Mail. hcrho@shinkim.com |
| ●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| TEL. 02 316 4219 | E-Mail. ihchung@shinkim.com |
| ● 이정진 전문위원 | TEL. 02 316 4417 | E-Mail. jjlee@shinkim.com |